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ly 21, 2025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체코 : 추가세액 신고서 초안 발표

2025 년 6 월, 체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추가세액(Top-up Tax) 관련 세무신고서 및 정보보고서 양식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은 수정 중인 추가세액 규정 및 국제조세 협력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EU DAC 9 지침과 OECD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무신고서 (Tax Return)

세무신고서 구성: 세무신고서는 총 3개 부분(체코 추가세액, 추가세액배분액, 기타 추가 세액 공통)로 구성됩니다. 납세자는 해당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계산은 자동화되어 체코 통화(크라운)로 환산됩니다.

- 체코 추가세액: 체코 내 관할 최저한세 계산과 해당 세액의 배분액이 포함되며, 투자 목적회사에 대한 별도 항목도 존재합니다.

-
- 추가세액배분액: 적격소득산입규칙(IIR)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른 산출 내역이 포함됩니다.

제출 방식: 세무신고서와 정보보고서 양식은 모두 체코어로만 제공되며, XML 형식으로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보고서 (Information Return)

정보보고서 구성: DAC 9 상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하며, OECD가 2025년 1월에 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정보보고서 별첨 A(Appendix A)에 따른 작성 지침을 포함합니다.

제출 대상: 매출액 7.5억 유로 초과 다국적 기업집단(MNE)의 체코에 소재하는 구성법인은 동 정보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교환 체계 (Exchange of Information)

- DAC 9 지침에 따라, 그룹의 EU 내 법인 전체에 대한 단일 정보보고서를 EU 내 하나의 국가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외 회원국에는 해당 제출 사실이 자동 통지됩니다.
- OECD 정보 공유 규칙 수용: 일반 및 관할별 정보는 타국 세무당국에 공유될 예정이며, 각국의 최저한세 규정 이행 수준에 따라 공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정보보고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5개월 이내, 최초 제출 시에는 18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024 사업연도 기준 제출기한: 2026년 6월 30일)

세무신고서: 체코 추가세액 및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22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024 사업연도 기준 제출기한: 2026년 10월 31일)

현재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의견이 반영된 이후 공식 시행령은 체코 법령집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쿠웨이트 : 소재국 추가세(DMTT)법 시행령(Bylaws) 발표

2024년 제 157호 법령(소재국 추가세 법)에 따라, 쿠웨이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25년 6월 29일 2025년 제 55호 장관령을 통해 해당 법령의 시행령(Bylaws)을 발표했습니다.

동 시행령은 총 1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 산출 방법, 준수 절차 및 행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적용 기준

- 동 시행령은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Pillar Two)을 기반으로 하나, 일부는 수정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은 연간 연결 매출액 7.5억 유로 이상을 기록한 다국적 기업으로, 2025년 기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최소 2개 사업연도에 해당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 쿠웨이트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한 외국계 기업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 및 신고 요건

- 과세대상 법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은 그룹 내 지정 법인을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법인은 IFRS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쿠웨이트 재무부로부터 인가받은 세무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세무신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세액이 0인 경우에도 제출 의무가 존재합니다.
- 세금은 신고 시 일괄 납부 방식이며, 분할 납부나 선납 요건은 없습니다.

고정사업장 확대 정의

- 시행령은 기존 소재국 추가세 법상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보완하여 고정사업장, 건설 고정사업장, 서비스 고정사업장, 종속 대리인 고정사업장 등과 부수적·보조적 활동에 대한 예외도 함께 규정합니다.
- '가상 고정사업장(Virtual PE)' 개념도 포함되며, 이는 비거주자가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재국 추가세 대상 기업은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사전-2025-법규국조-0425, 2025.06.17

제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24.12월부터 가족(배우자, 자녀)과 함께 베트남에 거주함
- 질의인은 A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출기간은 3년임
- 국내 가족, 직장, 사업체, 부동산 보유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탈퇴한 상태임

2. 질의요지

- 소득세법 제1조의2 등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 만일, 상기 거주자가 베트남 세법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한국·베트남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 제2 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임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 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 ①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03 관세

제 34 대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2025 년 7 월 14 일)

2025 년 7 월 14 일, 제 34 대 관세청장으로 이명구 관세청장이 취임하였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994 년 제주세관을 시작으로 32 년 간 관세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07~2011 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근무하는 등 국제 업무 경험도 많은 관세전문가이자, 고위직으로는 이례적으로 조세전문성을 인정받아 2021 년 조세심판관 상임심판관을 맡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관세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세청 내부 출신 인사로는 역대 4 번째로, 관세청 출신이 차장을 거쳐 청장으로 임명된 것은 2019년 노석환 관세청장 취임 이후 6년만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이 당면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징세 중심 조직을 넘어서, 국민경제 보호와 국익 수호,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경 종합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생 안정, 수출 회복, 무역안보 강화, 디지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선언하면서,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수입의 약 20% 수준을 뒷받침해 온 세수 기관으로서 올해에도 목표 세입인 72.5 조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 주요 약력

- ✓ ▲1969년 ▲경남 밀양 ▲밀양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6회 ▲관세청 조사감시국 외환조사과장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서울세관장 ▲부산세관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관세청 차장

2) 핵심 정책 추진방안(요약)

수출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통관·면세제도 지원 강화 |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통관 애로 해소, 규제 개혁, 관세외교 등을 통해 첨단 산업과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K-면세점 재도약과 공항 여객 서비스 개선 등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병행하여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역안보 수호를 위한 수사권 강화 및 전략물자 통제 확대 | 글로벌 통상 갈등 심화에 따라 전략물자 탈취, 국산 둔갑 수출, 브랜드 도용 등의 무역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이를 단속하고 엄단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권 확보, 정보분석 강화, 무역범죄에 대한 조사 종결역량 확충 등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총기·마약 등 국경위해물품 차단을 통한 국가안보 기여 | 총기, 폭발물, 신종 마약 등의 반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단속기관과

공조하여 마약 밀수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세관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첨단 장비 도입과 현장 점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AI 기반 디지털 관세행정 구현을 통한 행정 효율화 | 정부의 AI 국가전략에 발맞춰, 관세청 역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관세·통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관세·무역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내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기술 기반의 선제적·지능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공정한 과세 질서 확립 | 올해 세입 목표인 72.5 조 원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세관의 정당한 안내와 법 집행에 불응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정당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성실 납세자 보호와 납세자 권리 보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세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관세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시사점

(세수 확보와 공정 과세 강화) 조세징수기관인 관세청 내부인사 출신의 청장 취임으로, 세수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올해 72.5 조 원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탈세·체납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조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나, 과세일변도의 기초가 아닌 공정 과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도 강조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징수시도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도 높은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확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신산업 초기 안정화와 외환 관련 범죄 대응 강화를 명분으로, 관세청의 외환 수사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확보의지와 더불어 강도 높은 관세조사와 외환검사가 늘어나 기업들의 사전 대응과 내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요구됩니다.

(무역안보 및 국가안보 강화) 전략물자 탈취, 국산 둔갑, 총기·마약 밀수 등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이 강화되며, 관세청이 무역안보 수호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관련 법령과 조직, 수사권한 확대가 예상되므로 대외무역 환경에서의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디지털 전환 및 AI 행정 혁신) AI와 빅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해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관세청 내부 시스템과 민간 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관세행정의 미래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업지원과 민생 안정, 납세자 보호 강화)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생물품 긴급통관 등 내수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규제와 지원의 균형 잡힌 행정으로, 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되 엄정한 법 집행을 병행하며, 납세자 보호에도 중점을 뒀 국민 신뢰 회복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고시 등 2025 년 하반기 주요 개정 사항

1)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 개정 사유

- ‘간이조사’라는 용어가 다른 행정조사와 혼동될 소지가 있어 명확성을 위해 ‘간이 관세조사’로 변경
- 납세자가 조사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

✓ 주요 개정내용 및 효과

| 개정 항목 | 개정 효과 |
|-------------------------|--|
| ‘간이조사’ 용어 변경 및 정의 문구 정비 | ‘간이 관세조사’로 명칭 변경 및 방문조사 기간의 축소 & 전체 조사기간 축소에 대하여 ‘간이 관세조사’로 정의 문구 정비 |
| 처분검토회의 상정 생략 사유 추가 | ‘간이 관세조사’의 경우 처분검토회의 상정 생략 가능 항목으로 명확화 |
| 자료 제출 미이행 시 대응 조치 변경 | 서류제출대상 선별 및 검사율 상향 조치 삭제, 대신 담보제공 생략 중지 내용 추가로 실효적 대응 강화 |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 사유

- 수입신고 전에도 용도세울 전용물품 승인 신청을 허용해 업체 편의 제고
- 사후관리 생략 대상 금액 기준 상향 등 규제 완화

✓ 주요 개정내용 및 효과

| 개정 내용 | 개정 효과 |
|--------------------------|--|
| 용도세울 전용물품 사전심사 절차 마련 | 수입신고 전에도 사전 신청 가능 , 승인 시 사후관리 의무 일부 생략 허용 |
|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 금액 기준 상향 | 수입물가 상승 반영, 기준금액 50% 상향 조정 하여 부담 완화 |
| 사후관리 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명확화 | 확인 결과 이상 없더라도 신청 시 세관장이 통지 가능, 결과 전산 등록 의무화 |
| 감면물품 사후관리세관 변경 | 통관지 세관에서 관할지 세관 으로 변경하여 감면 목적 사용 점검 용이화 |
| 사후관리 업무 위탁 취소 근거 추가 | 수탁기관 장 철회 및 수탁기관 직제 변경 시 위탁 취소 가능 명문화 |

| | |
|----------------|--|
| 사후관리 위탁 대상 명확화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으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대두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후관리 위탁된 물품임을 고시에 명확히 규정 |
| 사후관리 업무 종결 사유 | 품목번호 또는 관세율 구분 변경 시 사후관리 종결 가능 규정 신설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정 사유

- 중소기업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신규 지정하고 필리핀과의 FTA에 신규 적용 확대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현지확인 절차를 개선해 신청인의 권익 보호 강화
- 전산시스템 장애 시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정비
- 원산지사전심사 신청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및 FTA관세법 개정에 따른 사전심사 반려 사유 정비

✓ 주요 개정내용 및 효과

| 개정 항목 | 개정 효과 |
|-------------------------------|--|
|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적용 가능 협정 확대 | 화장품류 등 17개 신규 지정, 총 343개 품목 지정 필리핀 협정(287개 품목) 신규 포함, 일부 협정 품목 추가·삭제 반영 |
|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현지확인 시작 5일 전까지 사전 통지 (신청인 권익 보호 강화) |
| 시스템 장애 시 업무 처리 절차 정비 | 발급기관 시스템 장애 시 수작업 발급 후 전산 등록 절차 신설 |
|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절차 개선 | 체약 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제출 가능, 제출 절차 개선 |
|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반려 사유 정비 | 모든 협정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협정 제한 반려 사유 삭제 |

2025년 7월 7일에 발송된 뉴스레터에 포함된 KPMG Digital Gateway의 상세 내용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해당 링크는 2025년 8월 25일까지 유효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 [KPMG Digital Gateway Customs-OTP](#)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